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단52848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성희진

변 론 종 결 2024. 2. 29.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13,339원 및 이에 대한 2022. 6. 22.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의, 202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038,523원 및 그중 ㉠ 94,613,339원에 대하여는 2019.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5,146,3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3,278,86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이다.
-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다.
- 3) C는 원고의 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및 명의신탁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C의 모인 D의 소유로, D이 거주하였는데,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7. 채권최고액 5,25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날 채권최고액 2,25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12. 13.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2) C의 채권자인 F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C는 피고에게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2013. 7. 1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는 2014. 4.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포함하여 매각대금 1억 2,500만 원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제53165호로 2014. 4.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1,4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 및 원고의 대출금 채무 변제

1) 피고는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9. 8. 21. C로부터 75,933,713원을 지급받은 후(을 제3호증)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제124135호로 2019.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I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8. 27. 중소기업은행에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94,613,339원을 변제하였고, 2019. 8. 26. I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9. 8. 27.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쳤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 확정

1) 피고는 C가 2019. 8. 21.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억 30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그중 75,933,713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2020. 1. 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093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0. 7. 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40123호로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20. 11. 4. “C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C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0나95754호(본소), 2020나95815호(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21다301268호(본소), 2021다301275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3. 11.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대출금에 관한 이자도 납부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금액 94,613,3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납부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94,613,3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피고는 C로부터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었으나,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전인 2019.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C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위변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위 구상금 채권은 사무관리에 따른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사무관리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39조 제1항은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상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할 수 없고, 위 구상금 채무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는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금액 94,613,339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의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2.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I조합에 납부한 위 대출금에 관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9. 8. 27. I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I조합에 이자로 2019년 합계 771,141원, 2020년 합계 2,150,734원, 2021년 합계 1,768,567원, 2022년 합계 2,238,985원, 2023년 6월까지 1,495,757원을 납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이거나 채무자인 피고와 대출금 채무 변제에 관하여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원고는 사무관리에 따른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민법 제739조 제1항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비용을 구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만 원을 제외한 34,613,339원, 위 대출금 6,000만 원에 관한 이자, 원금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것으로, 피고가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후 I조합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I조합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I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I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원고의 채무로 이를 변제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은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으면 반드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것이므로 피고가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형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의 모 D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와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차임 또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별지]

부동산 목록

1. 용인시 처인구 K 대 648㎡
2.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호

목조합석, 스테이지붕

1층 주택, 창고

1층 60.36㎡ 주택

1층 18.00㎡ 주택, 끝.

